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27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 권칠승·김준혁·김승원

전용기 • 박용갑 • 서미화

김영환 · 노종면 · 손명수

김기표 · 김영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기에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부족함.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특례시 지원을 위한 행정의 일 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례시 행정과 관련된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및 제10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인구 인정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인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설치 등 특례시와 관련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정의함.

나. 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및 제 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특례시의 사무 특례(안 제9조 및 별표)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에 관한 업무 등 27개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례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 삶의 질 향 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 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 2. "인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 국적동포
 - 다.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 제3조(국가 및 도의 책무) ① 국가 및 도(관할 구역 안에 특례시가 있는 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지

- 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례시의 책무) ①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 및 도의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특례시는 해당 특례시를 관할하는 도 및 그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3.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특례시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특례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특례시 지원 지역계획안(이하 "지역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안을 기초로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특례시의 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으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 다.
 - ③ 「지방자치법」 제68조·제102조 및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특례 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특례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제9조 관련)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원상회복명령 및 과태료의부과·징수 등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업무(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업무로 한정한다)
- 4.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60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관광지의 지정을 위한 조사·측량, 조성계획의 승인, 관광지 지정의 취소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업무
- 5. 「농어촌정비법」 제17조제1호가목,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이 경우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한다.
- 7.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 등에 관한 업무
-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의2, 제7조의6 및 제7조의7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관련 의견 제시 및 광역교통특별 대책지구의 지정·해제 요청 등에 관한 업무
-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7, 제18조의8 및 제21조에 따른 대부업 등의 등록・등록갱신・변경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대부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실의 공개, 등록수수료의 징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
-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0조까

지,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제57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해제, 물류단지개발지침 작성 관련 의견 제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조합설립의 인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물류단지의 재정비, 지정·승인·인가의 취소, 물류단지관리지침 작성관련 의견 제시 및 물류단지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의 권고 등에 관한 업무

- 1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물환경보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의 수립 관련 협의 및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업무
 - 나. 「물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의수리,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업무. 다만, 경상남도 창원시 경제자유구역 내의 경우는 제외한다.
- 12. 「산림보호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고시·관리·해제 및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신고수리 등에 관한 업무
- 1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산업단 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1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15. 「소방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휘·감독 및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업무(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시범실시한다)
- 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및 제21조에 따른 수목원·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정원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업무
- 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

-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사용약관 신고의 수리, 시설 사용료의 인가, 터미널 위치의 변경인가 및 승차권 판매 위탁의 예외 인정 등에 관한 업무
-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기준 완화 및 강화 등에 관한 업무
- 20.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
- 2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14조, 제17조, 제23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6조, 제66조, 제67조, 제67조, 제68조의3, 제69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8조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수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양도,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변경・폐업 신고수리,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신고수리,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대한업무 위탁, 정보통신공사업 현황등의 보고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업무22. 「주택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업무
 - 가. 「주택법」 제58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관련 의견 제시에 관한 업무
 - 나. 「주택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2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24.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서류 확인 및 변경 확인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39조의2 및 제46조의2에 따른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25.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관리에 관한 행정업무, 「선박의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 1항제2호, 제115조제2항 및 제133조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출입검

- 사·보고 및 과태료(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업무
- 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 에 관한 업무
- 2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무